

II

특별공급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10.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 및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추천 유형별 청약통장 조건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 : 전용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 청약시 청약 통장 최소 예치 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 면적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1.12.10.(금) 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

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등은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서류접수를 통해 자격검증 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할 예정이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 가능 하므로 추첨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청약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예비자 포함)을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해당기관장의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청약 기본자격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에 결격 사유가 있을 시 향후 부적격 및 계약취소 가 될 수 있으니 당첨자 선정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신청 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

- 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등.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12.10.\(금\) 예정](https://xi.co.kr/mi3)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홈페이지(<https://xi.co.kr/mi3>)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1833-2997

IV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 안내

■ 사업지 및 견본주택 위치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62-26

사업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2동 791번지 일대 (미아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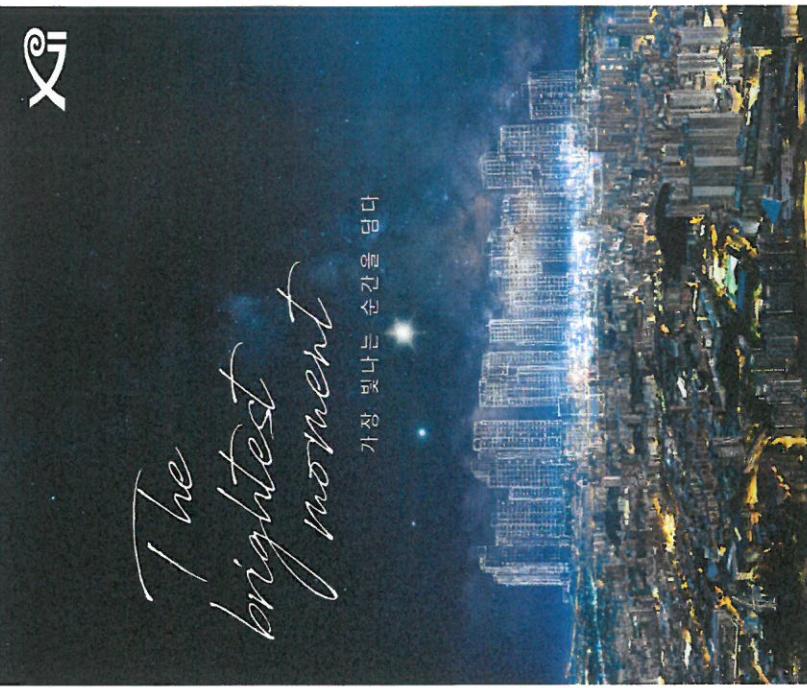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의 각종 개발계획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인·허가나 정부 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시행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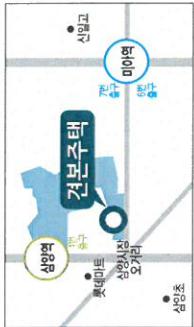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청 및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 : 지에스건설(주)





자이가 들어오면
도시는 달라집니다
특별한 순간이 일상이 되고,
빛나는 일상이 프리미엄이 되는 것!
도시를 빛나게 할 가장 빛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총 1,045세대 중 일반분양 327세대 | 총 38㎡~112㎡

1833-2997

☏ 미아3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www.gsa.or.kr

▶ 브랜드 등용도, 공동주택, 그린하우스 사업
▶ 사업 시 수입률 20% 이상, 저렴한 20~30만 원/평
▶ GS건설은 소비자의 아파트를 입기 위해 소비자인 청약 수급자에게 특별할인 혜택이 있어요!
▶ GS건설은 소비자 개별로는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펕여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및 문의는 종합설계센터에 따라 접수됩니다.



KakaoTalk
210
카카오톡



Naver



YouTube



자이TV



자이카카오톡과 사이트로 문의하세요! 문의 및 문의문장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12월 OPEN 예정 1833-2997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머물고 싶은 공간! 누리고 싶은 생활! 자이에서 삶의 행복이 쌓여갑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모두 갖추어진 이곳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일상 생활은 당신이 바라던 삶을 완성해 드립니다.

체육교통 프리미엄 어드로드 빠른 교통접근성
- 도로망 강남과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도보이용 가능
- 단지 내 편리한 우편사업장과 상영장 소외계곡

에코힐링 프리미엄 '금세권 단지의 깨끗한 생활'
- 음질사업과 청그라운 저연마 (무려 17 후석) 공기·복사음 절감주거지
- 복합선박공원 오픈 드 대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입장

최상의 생활 프리미엄 편리한 생활인프라
- 단지내 체육마트, 수유사성 및 청대체육관(이상), 동대체육관(이상) 입장
- 상암동 주민센터, 고대인양병원, 민생병원 등 인접한 생활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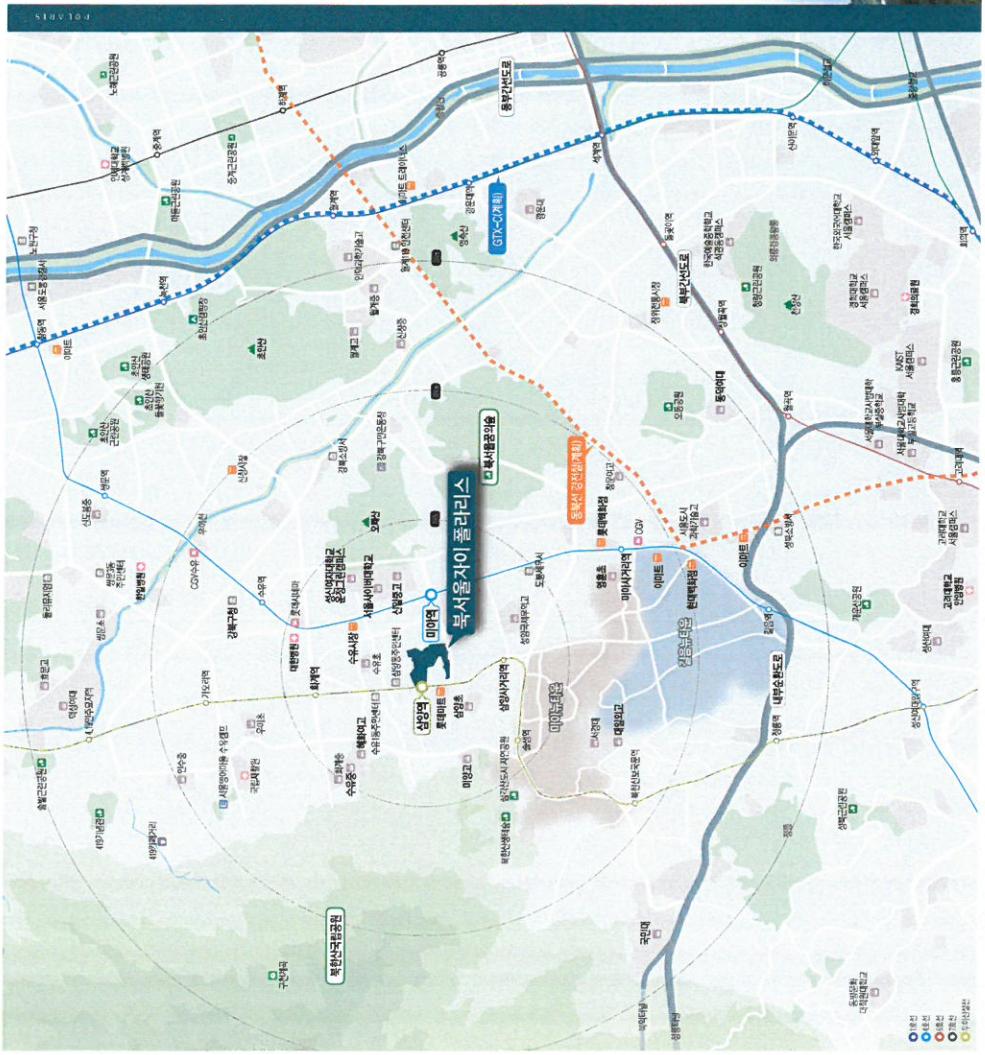
수준높은 교육 프리미엄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인프라
- 단지 인근 삼양초등학교, 수유초, 양재초, 수수중등 등 풍부한 교육환경
- 신입고, 영종고, 대원고, 고려대 등 다수의 명문학교 입장

대대적인 개발 계획과 미래비전
- 서울 북부의 남을 넓게 연결하는 GT-C 도로
- 동북신 경관교(상계 미아사거리) 융승(백제계)
- 단지 인근 주거환경 개선으로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 본 홍보물의 단계별 개발 계획은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척도별 단계별로
* 사업계획 및 단계별 개발 계획은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척도별 단계별로

* GT-C - 국도 제46호선(구 국도 제46호선) + 국도 제2호선(구 국도 제1호선) + 국도 제45호선
* 동북신 경관교(상계 미아사거리) 융승(백제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상계동 253번지
* 경증화된 세부 단계별 개발 계획은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척도별 단계별로

* 단지 내 편리한 우편사업장은 향후 개설 예정입니다.



※ 단지 내 편리한 우편사업장은 향후 개설 예정입니다.